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18

발의연월일: 2022. 10. 17.

발 의 자:고용진・김주영・박대수

박재호 • 변재일 • 이병훈

이원욱 · 임오경 · 한병도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영화 '기생충' 및 넷플릭스 드라마 '오징어게임' 등 우리나라 영 상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지원과 함 께 정부의 재정·세제지원의 영향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임.

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문화예술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때임.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. 엘리트·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할 때임.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·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,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.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

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,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50% 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체육단체의 재정구조 개선과 고유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체육 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 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4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 중 "해당한다"를 "해당하며, 제10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선수단 및 국가대표팀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만 해당한다"로 하 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 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(이하 "대한체육회"라 한다) 및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
 - 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 (이하 "대한장애인체육회"라 한다)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종목 별 경기단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정 아 개 제74조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제74조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산입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금산입 특례) ①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 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인세법」 제29조를 적용하 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 사업(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 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 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 업만 해당한다)에서 발생한 소 ----해당하며, 제10호의 경우에 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는 대한민국 선수단 및 국가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표팀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 에만 해당한다-----1. ~ 9. (생 략) 1. ~ 9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.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 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

 육회(이하 "대한체육회"라

 한다) 및 대한체육회의 회

 원종목단체

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 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 애인체육회(이하 "대한장 애인체육회"라 한다) 및 대 한장애인체육회의 종목별 경기단체